

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**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**를 이에 공포한다.

안 산 시 장 이 민 근 인

2023년 11월 8일

안산시조례 제 2803 호

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기업인의 날 지정·운영) ①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욕을 높이며,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4월 30일을 안산시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

② 안산시 기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안산시민”을 “안산시 기업인”으로 한다.

소관 실·과		기업 지원 과
입 안	실·과 장 직위·성명	기업 지원 과 장 채 충 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업 지원 팀 장 윤 혜 원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현 철 (행정 2624)